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한국정책방송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10월 20일
한국정책방송원장

1 임용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방송무대서기	1명	정년 적용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영상부(세종)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아카이브	방송무대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공유 아카이브 플랫폼(나누리 포털) 운영·관리 - 포털 메뉴/기능 관리, 고도화 기획, 제공 실적 관리, 민원 대응 등 아카이브 기획 - 공공콘텐츠 수집 및 활용, 아카이브 편집 - 아카이브 중장기 운영 방안 마련 등 KTV 저작물 정비 및 관리 - 인제스트, 영상편집, 메타보완, 오류수정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11.20.) 기준]

채용 분야	직위별 요건
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공무원경력) 2.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 시험령 별표9의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자(공무원경력) 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직무분야에서 공무원 외 다른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민간경력)
	☞ 직무분야 경력: 정부/공공기관, 지자체, 방송관련 기관(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등)에서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아카이브 관련 업무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기준 중 해당되는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 중복 지원,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판단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 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경력'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10년, *증빙자료 제출 필요)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증빙자료(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많은 경력)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5.10.30.) 기준]

채용분야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
아카이브	<p>【우대요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배점) 관련분야 전공 학위(전문학사 이상 차등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언론/미디어/홍보/아카이브 관련: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광고홍보학과, 방송(영상)제작과, 멀티미디어학과, 사진과, 사진영상과, 영상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계학과 등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기타 다른 자격증 제출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산업인력공단) - 정보처리기사(산업인력공단)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국가기록원) <p>*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대상 ** 복수 제출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공고문 참고</p>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우대요건 관련**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 근무경력(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가능)**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시험령 제27조제4항)
 -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많은 경력)
- **관련분야 전공 학위(전문학사 이상)**
 - 등급별 차등 배점하며 중복 제출 시 가장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 박사 및 석사의 경우, 수료는 불인정
-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산업인력공단)
 - 정보처리기사(산업인력공단)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국가기록원)
 - *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대상
 - ** 복수 제출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경력'요건 응시자 참고사항]

○ **경력기준 요건별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음**

구분	채용자격요건(경력기준)	자격요건	우대요건
방송무대 서기	1.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공무원경력)	공무원경력만 인정	자격요건 충족 이후 민간·공무원 경력 합산 인정
	2.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 시험령 별표9의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자(공무원경력)		
	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직무분야에서 공무원 외 다른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민간경력)	민간경력만 인정 (공무직·기간제 등 포함)	

※ 우대요건은 '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 지원자가 4명 이상 15명 이하인 경우 : 3배수 선발
 - 지원자가 16명 이상인 경우 : 4배수 선발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때에는 형식심사(소극적 서류전형) 진행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번호 순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소통·공감, ②헌신·열정 ③창의·혁신 ④윤리·책임 ⑤전문지식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 평가요소 "⑤전문지식" 관련하여 세부 평가(실기 중심) 포함(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공지)

[아카이브 기획 등 능력 평가]

- 아카이브 운영·기획 : 아카이브 현안 관련 주관식 문항 답안 작성
- 아카이브 기술 : 영상에 대한 메타데이터 작성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5.10.20.(월) ~10.30.(목)	'25.10.28.(화) ~10.30.(목)	'25.11.14.(금)	'25.11.20.(목)	'25.12.8.(월)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한국정책방송원 홈페이지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바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5. 10. 28.(화) ~ 10. 30.(목) 18:00
※ 취소 가능 기간: 2025. 10. 30.(목) 09:00 ~ 11. 2.(일) 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https://gongmuwon.gosi.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안내사항

- **응시 수수료: 5,000원***응시 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 소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 수수료 반환
* 단,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를 우선 납부해야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증빙자료(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서접수 취소 기간(11.2.(일)18시)까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마이페이지-응시현황-제출서류 메뉴)에 등록하면 응시 수수료는 반환됨(단, 결제 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부담)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 수수료 환불(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부담)
- **접수 기간에는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최종 제출을 완료하거나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는 붙임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귀속
- 응시표 출력(응시번호 확인) : 2025. 11. 4.(화), 09:00부터 응시표 출력가능
- 응시표 출력방법: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제출)	응시원서 1부	인터넷 접수시 작성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1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5호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 증명서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만 제출, 병역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제출서류는 하나의 압축파일(zip)로 제출해야 하며, 용량은 10mb로 제한됨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서식 7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5. 12. 9. ~ 12. 23.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5. 12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른 호봉제 적용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지원부(044-204-8373)로 문의 바랍니다.

* 응시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 심사 관련 사항은 문의 제외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아카이브	방송무대서기	1명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영상부(세종시)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공유 아카이브 플랫폼(나누리 포털) 운영·관리 ○ 포털 메뉴/기능 관리, 고도화 기획, 제공 실적 관리, 민원 대응 등 ○ 아카이브 기획 - 공공콘텐츠 수집 및 활용, 아카이브 편집 - 아카이브 중장기 운영 방안 마련 등 ○ KTV 저작물 정비 및 관리 - 인제스트, 영상편집, 메타보완, 오류수정 등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혁신적인 사고능력, 발전가능성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사고력, 창의력, 전문성, 과업이해력, 문제해결력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편집(파이널컷, 다빈치 등 넌리니어 편집) ○ 영상제작(방송프로그램 및 콘텐츠 기획·편집) ○ SNS 등 뉴미디어 및 플랫폼 등에 대한 전문 지식 ○ 아카이브(Archive) 관련 전문성 ○ 생산형 AI 업무 활용 능력 		
응시 자격 요건	경력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공무원 경력) 2.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 시험령 별표9의 임용에 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자(공무원경력) 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직무분야에서 공무원 외 다른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민간경력) <p>☞ 직무분야 경력: 정부/공공기관, 지자체, 방송관련 기관(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등)에서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아카이브 관련 업무</p>	
우대요건	<p>【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분야 경력(방송 콘텐츠 제작 또는 아카이브 관련 업무) 2. 관련분야 전공 학위(전문학사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언론/미디어/홍보/아카이브 관련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광고홍보학과, 방송(영상)제작과, 멀티미디어학과, 사진과, 사진영상과, 영상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계학과 등 ※ 중복 제출 시 가장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박사 및 석사의 경우, 수료는 불인정 3.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산업인력공단) - 정보처리기사(산업인력공단)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국가기록원) <p>*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대상 - 복수 제출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p>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되어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내 용
1.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1호 작성 - <u>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u>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2.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 A4 2매 이내로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3.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 A4 3매 이내로 작성 (직무 관련 추진 계획, 수단, 방법 등 기술) ○ 자필 서명 필수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제4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 서식 제5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6. 주민등록 초본 1부 (병역사항 기재된 것)	○ 해당자에 한함 - (남자만 해당) 병역사항 포함된 초본을 제출하되, 미포함 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7.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만 해당) 응시자격 요건의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8. 경력(재직) 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새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공고일 이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와 함께 '공고일 이후 발급된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경력 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함 <p>*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p>

구 분	내 용
9.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회에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활용할 경우 학위증 사본 제출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 서식 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10.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산업인력공단) - 정보처리기사(산업인력공단)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국가기록원) ※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대상 ※ 복수 제출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 제출서류는 하나의 압축파일(zip)로 제출해야 하며, 용량은 10mb로 제한됨

<별지서식 제1호>

이 령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방송무대서기 (아카이브)	응시 자격 요건	경력1 <input type="checkbox"/>	경력2 <input type="checkbox"/>	경력3 <input type="checkbox"/>	성명	
-------	----------	-------	---------------	----------	------------------------------	------------------------------	------------------------------	----	--

2. 응시자격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과)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과장 (4급)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3. 우대요건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 우대요건의 경력은 **응시자격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 경력만 작성**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과)		18.1.1 ~ 20.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7.5.1~18.1.1.(육아휴직)	과장 (4급)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국제통상학	'00.00.00		국제통상학 석사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	'00.00.00		XXXX공단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방송무대서기(아카이브)
-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 ④ 응시자격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 예시) 과장, 팀장, 사원, 방송무대주사, 공무원, 계약직, 기간제, 시간제, 프리랜서, 인턴 등
 - 담당업무는 경력 및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내용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주 근무시간'의 개념은 초과(휴무)근무를 포함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닌 표준(기본)근무 시간을 의미함
 - 시간제 근무자인 경우: '주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별도 첨부
 -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 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응시자격을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학위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는 불인정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전문)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자격증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 글씨크기 등은 작성자가 적절히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여러 장으로 작성)

※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격증 및 기타 우대요건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 필) 함께 첨부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방송무대서기(아카이브)
-----	--	-----------	--------------

◎ 자기소개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휴면명조 12p 가는 글씨, 줄간격 160%로 작성)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1. 현재까지 귀하가 담당했던 업무에서의 실적을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 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2025. . . 작 성 자 : (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방송무대서기(아카이브)
-----	--	-----------	--------------

◎ 직무수행계획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휴면명조 12p 가는 글씨, 줄간격 160%로 작성)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1.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2.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분야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소견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인 실천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
3.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과 서명 포함

2025. . . 작 성 자 : (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한국정책방송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 경력, 자격, 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 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학위,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	--	----------------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 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계재일, 처분정**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한국정책방송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예시)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	------	------

학위개요	<input type="checkbox"/> 논문제목 <input type="checkbox"/> 한글명 : <input type="checkbox"/> 영문명 : <input type="checkbox"/> 심사 년월일 : <input type="checkbox"/> 지도교수 :
------	---

주요내용 요약

I.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II. 연구내용

III.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5. . .

응시자 : (인)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정책방송원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 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